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후계어업경영인 지정 사후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연구소 ○○사무소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4. 9. 18.부터 2016. 7. 20.까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육성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

1) 선정기준 및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
- 지원사업
 - 단계별(어업인후계자 100백만 원, 전업경영인 20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 원)로 어업기반시설자금 융자(이차보전, 융자조건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수산계 대학의 전문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경영능력 향상 전문교육 지원
 - 후계어업경영인 교육(지자체, 민간단체) : 시·도별 수산사무소 및 민간단체(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활용하여 후계어업경영인 대상 정책 및 경영향상 교육

이에 따라 충청남도 ○○○○연구소에서도 아래 [표1]과 같이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등 686명을 선정하여 40,038백만원의 용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및 용자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86	40,038	511	27,216	150	11,200	21	1,822
○○○○과	469	18,803	343	12,924	103	4,533	17	1,346
○○사무소	81	4,496	58	3,031	23	1,465	2	200
○○사무소	136	16,739	110	11,261	24	5,202	2	276

그리고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협은행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충청남도 ○○○연구소는 2014년말, 2015년말 및 2016년말에 용자취급 ○○은행과 합동으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2]와 같이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사망, 어업정지 60일 이상 등의 사유로 '14년 9명 '15년 7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되었고, 특히 ○○○연구소 본 소(당시 ○○관리소 ○○○과)의 '15년도 수산업경영인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관리과-000, 2016.1.15.)에 따르면 취소 대상인 부적격자 3명을 후계어업경영인 지정을 취소

한다고 조치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표2] 후계어업경영인 현지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연구소	16	9	7	0
(○○○○과)	5	2	3	0
(○○사무소)	10	7	3	0
(○○사무소)	1	0	1	0

따라서 충청남도 ○○○○연구소 본 소, ○○사무소 및 ○○사무소는 현지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후계어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소명 등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후계어업경영인은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 본 소(당시 ○○관리소 ○○○○과)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타업에 종사하고 있는 ○○○을 제외한 어업정지 60일 이상인 ○○○, ○○○, ○○○ 등 3명에 대해 후계어업경영인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등 후계어업경영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후계어업경영인 현지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현황

<단위 : 명>

연도	성명	구분	선정연도	취소사유	취소여부	비고
2014	○○○	어업인후계자	2008	어업정지 165일	×	-
	○○○	전업경영인	2013	어업정지 60일	×	-
2015	○○○	어업인후계자	2006	타업 종사	○	-
	○○○	어업인후계자	2005	타업 종사	×	어업 복귀
	○○○	어업인후계자	2015	어업정지 120일	×	-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자 중 부적격자를 관련 법률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